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23 선고 2016가단5052398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

피고1. A

2. B

변론 종결2016. 10. 26.

판결 선고2016. 11. 23.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2,756,217원과 그 중 12,530,802원에 대하여 2015. 10. 5.부터 2016. 4. 28.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들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31. 체결된 대물반환예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는 피고 A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2016. 9. 22. 작성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받을 15,000,000원의 배당금지급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청구

가. 인정 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자백간주).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2,756,217원(대위변제금 12,530,802원 + 대지급금 225,415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12,530,802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10. 5.부터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6. 4. 28.까지 약정에 의한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

가. 인정 사실

1) 피고 A은 2014. 12. 31. 피고 B와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물반환예약(이하 이 사건 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2) 피고 B는 2014. 12. 31.부터 2015. 1. 2.까지 피고 A에게 1,000만원을 대여하였고(이체확인증을 보면 피고 A의 거래처에 돈을 송금해 주는 등의 방식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임), 피고 A은 2015. 1. 2. 피고 B에게 1,000만원에 대한 차용금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3) 피고 A은 이 사건 예약 당시 대원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채무 6,500만원, 별지 청구원인의 국민은행에 대한 채무 1,440만 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2,800만원, 농협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3,000만원 등 원금 기준으로 137,4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시가 1억 2,000만 원인 별지 기재 부동산이 유일한 재산이었다.

4) 이후 별지 기재 부동산은 대원신용협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개시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112,134,000원에 매각되어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5) 경매법원은 2016. 9. 22. 담보가등기권자인 피고 B에게 3순위로 1,500만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위 채권자들 중 대원신용협동조합을 제외한 일반 가압류채권자들(원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농협캐피탈 주식회사)은 아무런 배당을 받지 못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8, 9,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사건 예약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기 전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사건 예약 전에 이미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이 사건 예약 5개월여 후인 2015. 6. 5. 피고 A이 대출금 이자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피고 A이 가까운 장래에 구상금채무를 부담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장래의 채권임에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예약 당시 피고 A이 채무초과 상태였던 점과 피고 B가 담보가등기권자의 지위에서 다른 가압류채권자들에 비해 우선변제를 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예약은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라.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는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선순위 근저당권(2013. 6. 17.자 대원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연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가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이 사건 예약이 사해행위인 점을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인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가 자신의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위 판결 등 참조). 을 제3호증을 보면, 피고 B가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 A의 대출금 연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들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피고 B가 1,000만원을 빌려주면서 별지 기재 부동산 전부에 관한 가등기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사정만으로 악의의 추정을 뒤집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 B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원상회복의 방법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이 피고 B에게 1,500만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갑 제9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2016. 9.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단809287호로 위 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 피고 B가 가등기권자로서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으로부터 배당받게 될 배당금 및 이자에 대한 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6. 9. 13. 대한민국에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별지 기재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고, 이에 따라 피고 B의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가 말소되었고, 위 경매절차의 배당표는 확정되었으나 원고의 위와 같은 배당금지급금지 가처분으로 피고 B가 배당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은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양도통지를 명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예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피고 B는 위 1,500만원의 배당금지급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위 채권의 양도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신용무

별지